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2024. 10. 11. (금)

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(안)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 : 951,000천원

○ 출연목적

-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R&D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 기능 수행
- 남·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신산업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, 지역산업 지능화·고도화 전략 마련

○ 출연내역 : 총 951,000천원

- R&D 인력 인건비 1식(551,000천원)
-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1식(200,000천원)
-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1식(200,000천원)

※ 자세한 사항은 「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」 ①-③-1, ①-③-2, ①-③-3 ‘출연 사업계획서’ 참조

○ 기대효과

- 지역 R&D 거점기관으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, 지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력 확보
-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북·남부권 기업지원 강화 및 신성장산업 발굴·육성을 통해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

나. (재)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: 2,851,395천원

○ 출연목적

- 인재육성·평생교육 지원체계 일원화 및 연계 발전으로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 역량 강화
- 글로벌인재 양성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 등 도 현안사업과 연계된 신규목적사업 확대 추진

○ 출연내역 :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1식(2,851,395천원)

※ 자세한 사항은 「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」 ②-③ ‘출연 사업계획서’ 참조

○ 기대효과

-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 우수 인재 발굴, 양성 및 지원
- 도내 평생교육 기관·단체 총괄 관리 및 지원·협력 체계 등 구축으로 질적 향상 도모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제출배경

- 이 출연계획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⁴⁾에 따라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(안)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임

나. 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

- 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출연계획안은 「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⁵⁾에 따라 지역 과학기술 진흥 촉진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
- 2025년도 출연예정 금액은 9억 5,100만원(도비)으로 전년 예산(9억 3,000만원) 대비 2,100만원(2.3%) 증액되었음. 증액 사유는 전액 R&D 인력 인건비이며, 남·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함
- 석·박사급 R&D 인력 확보로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가상(VR)·증강(AR) 현실,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반의 중대형 국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수주*하고, 지역 주도 과학기술 진흥 정책 수립 및 미래 신성장산업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*2023년 수주실적(30,127백만원)

4) 지방재정법 [시행 2024. 5. 17.]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5)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[시행 2022. 12. 30.] 제6조(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)
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는 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도지사는 과기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- 아울러,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남·북부권에 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, AI 제조기반 인프라 구축 및 과학기술 확대 보급 등을 통해서도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출연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출연금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됨에 따라 지역 과학기술 진흥 및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실적 등 업무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함

다. (재)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

- (재)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계획안은 「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4조 및 제8조⁶⁾에 따라 지역 우수인재 발굴·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위한 것임
- 2025년도 출연예정 금액은 약 28억 5,100만원(도비)으로 전년 예산(24억 4,700만원) 대비 4억 400만원(16.5%) 증액되었음. 주요 증액사유는 도 현안사업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을 위한 전담 팀(글로벌인재팀)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평생교육 사업 확대이며, 2025년도부터 온라인 TOPIK 교육 프로그램 운영, K-유학생 페스티벌,

6)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[시행 2024. 4. 5.]

제4조(사업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지역 우수 인재 발굴·양성 사업
 - 가. 충북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
 - 나.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 및 도민 자녀 장학사업
 - 다. 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 사업
 - 라. 과학·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
 - 마.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
2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와 다음 각 목의 사업
 - 가.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·연구·조사·컨설팅
 - 나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
 - 다. 문해교육센터 운영
3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
4.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제8조(출연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유학생 정주 장학금 지원 등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

- (재)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‘충북인재양성재단’ 과 ‘충북평생교육진흥원’ 의 통합으로 출범한 기관으로, 기존 인재육성·평생교육사업이 확대되고 도정 현안인 외국인 유학생 사업이 신규 추진됨에 따라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- 다만, 신규사업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이 소모성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고 도내 우수 기술인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착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, 향후 성과 관리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해 보임

라. 종합의견

- 이 계획안은 ‘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’ 과 ‘(재)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’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것임
- (충북과학기술혁신원) R&D 인력 인건비 및 북·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고, 사업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- (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)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전담팀 신설 및 평생교육 등 기존목적사업 확대에 따른 지원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